

□ 사건의 경과

사건 번호	2006가합9822
원고	노00 외 2
피고	주식회사 00
소제기일	2006. 6. 21.
판결 선고일	2007. 7. 3.
쟁점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여부
결과 (주문)	<input type="checkbox"/> 원고 승소 <input type="checkbox"/> 원고 패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2005. 11. 26. 15:30경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손님인 망 죄○○과 그 동료 3인은 경기보조원 강○○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카트(ULB유도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트 좌측 뒷좌석에 탑승한 망 죄○○이 카트 밖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망 죄○○은 그 충격으로 2005. 12. 7. 뇌경막하혈증 및 뇌실질내혈증으로 인한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 죄○○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하여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강○○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

일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도로사정과 카트의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 죄○○이 카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카트 좌석에 제대로 앉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 쟁점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여부

○ 법원의 판단

1.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하여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비로소 운행자의 면책이 허용될 뿐인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죄○○이 타고 있던 카트의 뒷좌석 양 옆에는 난간이, 카트 지붕에는 손잡이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20km이고 급경사길에서는 그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사고 장소는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최고로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위 최고 주행속도보다 크게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우로 급은 도로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죄○○은 자신의 좌석 지붕쪽에 부착되어 있는 손

잡이나 옆의 카트 난간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차체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망 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죄○○의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죄○○의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카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행자인 골프장 운영회사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